

신청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독일의 가업승계지원제도 현황

유주선 |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I 서론

가업상속공제제도라 함은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¹⁾ 동 제도는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기업을 지속적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²⁾ 여기서 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 가업승계지원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가업상속공제제도라 할 수 있다. 2019년 6월 12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을 공개하였다.³⁾ 금번 개편(안) 주요내용으로는 사후관리 기간, 업종변경 범위, 자산유지 의무, 고용유지 의무 및 연부연납특례 대상 등이다.⁴⁾

표 1 |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주요 내용

현행	구분	개편(안)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	사후관리 기간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변경만 허용	업종변경 범위	· 중분류 내까지 허용 · 일부는 중분류 범위 밖 변경 허용
사후관리기간 20% 이상 자산처분 금지	자산유지 의무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유지 · 중견기업은 120% 이상 유지	고용유지 의무	중견기업도 100% 이상 유지로 허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2 박중수, "상속세법상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영국과 독일 세제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9, 47면.

3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2019년 5월 30일 정부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5개 정당 등에 제출한 바 있다.

4 매일경제신문 2019년 6월 12일 자 A3면 참조.

현행	구분	개편(안)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만 해당	연부연납 특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 피상속인 경영 지분보유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 삭제

한편, 일본 정부는 2019년 5월 31일 중소기업의 원활할 가업승계를 위해,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후계자를 상대로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기존 제도를 손질하고자 하고,⁵⁾ 중소기업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취득세 경감 등 추가 세금 우대정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2016년 11월 14일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II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주요 변천과정

1. 의의

독일은 1997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2002년 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상속기업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바이에른 주의 주장과 함께 다시 한 번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전개되었다.⁶⁾ 2006년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가업승계 조세감면 법안’을 연방 각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007년 1월부터 동 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2006년 11월 7일 자산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들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상속세법·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⁷⁾ 이에 독일 정부는 2007년 11월 ‘상속세법·증여세법’과 그 평가방법에 대한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된 시안은 같은 해 12월 11일 각료회의를 통과, 2008년 11월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동년 12월 15일 ‘상속세법 및 평가법의 개혁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form des Erbschaftsteuer- und Bewertungsrechts, 이하 ‘상속세 개혁법’이라 한다)’이 상원을 통과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9년 1월 1일 개정 전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

5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업승계를 거부한 후계자 중 약 60%가 기업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이유로 꼽았기 때문이다.

6 최갑선, “독일 가업 재산 승계와 상속세 감면 제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12면.

7 BVerfGE 117, 1.

8 김완일,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일본·독일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2, 65면 이하.

2. 2009년 1월 1일 상속·증여세 개혁법 이전 내용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던 상속·증여세법은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독일에 소재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과세 면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35%를 과세소득 계산 시에 공제해 주는 특례규정을 두었다.⁹⁾ 즉, 사업용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256,000유로에 대해서 과세 면제하고,¹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65%만을 과세 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¹¹⁾ 다만, 상속·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a항에서 규정하는 과세등급 II 또는 III에 해당하는 기업자산 취득자에게는 상속·증여세법 제19a조에 따라 과세등급 I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다.¹²⁾

3. 2009년 1월 1일 상속·증여세 개혁법 이후 내용

사업용 재산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재산의 35% 공제하는 방식에서 85%로 인상하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0% 전액 과세 면제되는 혜택을 돌아가도록 하였다.¹³⁾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85% 공제요건

사업용 재산의 8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으려 한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¹⁴⁾

첫째, 사업의 계속성 요건으로 상속인은 승계 받은 사업을 승계받은 후 7년 동안 그 재산과 함께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고용의 계속성 요건으로 사업승계 후 7년 동안 당해 기업 사용인에게 지급된 급여의 합계가 사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650%이상 되어야 한다.

셋째, 승계된 자산 중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 관리자산(passive asset)¹⁵⁾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김진·송은주·정희선, "주요국의 기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세법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조세연구원, 2010, 61면 이하.

10 ErbStG § 17 Abs. 1.

11 ErbStG § 13 Abs. 1 Nr. 2.

12 최강선, "독일 기업 재산 승계와 상속세 감면 제도", 증권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 13면.

13 특히 동 법률은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율을 35%에서 85% 및 100%로 확대하였는데, 이것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를 고려하되, 이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자세한 임동원, "독일 기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2017년 11월 27일, 6면.

14 김완일, "기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일본·독일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2, 66면.

15 상속·증여세법상 관리자산이라 함은 제3자에게 사용권을 이전한 토지·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상의 권리와 건물, 합자회사에 대한 지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1문 제2호와 제3항 또는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는 회사 및 그에 상응하는 회사로서 외국합자회사의 지분에의 참가, 유가증권과 그와 유사한 채권, 예술의 대상물·예술적 수집물·학문적 수집물·도서·화폐·귀금속과 보석 등을 의미한다.

(2) 100% 공제요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0% 전액 과세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요건이 충족하여 10년이 경과하면 조세 부담은 완전히 소멸한다.¹⁷⁾ 전액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계속성 요건으로 상속인은 승계 받은 사업을 사업승계 후 10년 동안 그 재산과 함께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고용의 계속성 요건으로 사업승계 후 10년간 당해 기업 사용인에게 지급된 급여의 합계가 사업승계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1,000% 이상 되어야 한다.

셋째, 승계된 자산 중 임대자산, 투자자산 등 관리자산(passive asset)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말아야 한다.

4. 2010년 1월 1일 경제성장촉진법 이후 내용

경제성장촉진법(Wachstumsbeschleunigungsgesetz)은 2009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증여세 개혁법 이후의 내용 가운데 85% 공제요건과 관련하여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에서 사업용 재산의 상속 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총급여액의 규모도 650%에서 400%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¹⁸⁾ 100% 공제요건 역시 완화 정책을 제공하였는데, 사업용 재산의 상속 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유지해야 하는 급여총액의 규모도 1,000%에서 700%로 축소하였다.¹⁹⁾

III 2014년 12월 14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 개정

1. 결정 요지

2012년 10월 연방 재정법원이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감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요지로 결정하였다.

16 김원일,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일본·독일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2, 67면.

17 사후관리요건에 따라 사업승계 후 7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승계 받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사업승계 후 7년 또는 10년간 급여총액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경감된다. 다만, 사업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요건을 충족하여 자본이득을 6개월 이내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 혜택이 유지된다.

18 2009년 11월 9일 “경제성장촉진법안”의 승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상속·증여세의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촉진법안”은 독일의 경기부양책으로 2009년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 연정이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19 사후관리요건에 따라 사업승계 후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승계 받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승계 후 5년 또는 7년간 급여총액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경감된다. 또한 사업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자본이득을 6개월 내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 혜택은 유지된다.

첫째, 상속 및 증여세법 제13a조 및 제13b에 의거 기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공제 규모와 공제 방법들은 부분적으로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현행법은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되지만, 입법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새 규정을 제정할 의무를 진다.

둘째, 기업 존속을 보장하고, 이로써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은 입법자의 결정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입법자는 조세감면을 위해서 적절한 정당화 사유를 필요로 한다.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가 세금과 관련된 유동성 문제로 인해 위협받지 않도록 생산적인 재산에 조세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목표설정의 정당성에는 헌법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셋째, 상속세 공제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제의 필요성 심사도 없이 대규모 기업에까지 제공된다면, 기업재산에 대한 무상 취득 혜택 부여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세금을 감면하면 조세의 평등에 어긋나게 되므로, 기업 규모를 규정하는 정밀하고 알기 쉬운 기준을 마련하여 필요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공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과제이다.

넷째, 급여총액규정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종업원 20명 이하를 고용한 소규모기업에게 급여총액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한 결정이 실질적으로 반대로 작용하여 대부분의 기업이 감세혜택을 받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2. 개정 과정

기업의 상속 및 세금감면제도에 대해 평등권 위반으로 위헌 결정은 이후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일련의 법률 개정 및 연방-주정부 간 논의·합의 과정 및 공표 과정이 진행되었다. 2015년 7월 8일 연방 재정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연방정부의 심의 후 201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개정 완료를 명시하였다. 이후 2015년 10월 12일, 연방의회(재정위원회)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2017년 2년여에 걸쳐 법률 개정 관련 연방-주 정부 간 논의·합의 과정 및 공표가 추진되었다. 2016년 10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입법논의가 완료되었으며, 동년 10월 14일 개정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 2017년 6월 22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연방 헌법재판소 판례법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이 공표·발효되었다. 2017년 6월 22일, 독일 주들은 개정된 규정의 적용에 관한 “상속 및 증여세법 조항 국가 법령”에 합의하고 정식 법령을 공표하였다.²⁰⁾

20 개정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이에른 주는 해당 공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처음으로 연방정부는 모든 주의 가장 상위 세무당국에 대해 동일한 법령을 적용한다고 발표해왔던 기존의 관행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 법령은 바이에른 주를 제외한 독일 15개 연방 주에서만 적용되게 되었다.

3. 개정 주요 내용

(1) 기업에 대한 급여총액 유지 강화

개정 법률은 종업원 20인 이하 기업에 대한 급여총액 유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가족경영기업의 비중이 높은 특성에 따른 기업의 개인소유 요소를 배려하기 위해 해당 가족경영 기업의 수혜자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과세 시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면적인 면제는 5명 이하인 사업체로 축소하고, 20명 이하의 경우에도 적용 요건을 구분하였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²¹⁾

가. 종업원 6명 이상 ~ 10명 이하

일반감면의 경우(85%)에는 250% 급여총액 및 5년간 기업의 유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선택감면의 경우(100%)에는 500% 급여총액 및 7년 기업의 유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종업원 11명 이상 ~ 15명 이하

일반감면의 경우(85%)에는 300% 급여총액 및 5년간 기업의 유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선택감면의 경우(100%)에는 565% 급여총액 및 7년 기업 유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 16명 이상 및 2천 6백만 유로(약 344억 7,496만 원) 이하 상속재산

일반감면의 경우(85%)에는 400% 급여총액 및 5년 기업의 유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선택감면의 경우(100%)에는 700% 급여총액 및 7년 기업의 유지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대기업 상속의 심사 강화

2천 6백만 유로(334억 원) 초과 대기업 상속의 경우 아래의 ① 세감면 필요성 심사 또는 ② 세감면 특별공제(기업자산 증가에 따라 세감면 감소) 신청이 가능하다.

가. 세감면 필요성 심사

기업자산의 50%를 동원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나머지는 세금을 면제한다. 단, 상속세 개인적 변제 불가능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다. 해당 사용가능 자산에는 이미 인수받은 재산과 승계 시 인수 받은 비사업용 개인자산과 사업용 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선택 감면(공제 금액 2천 6백만 유로 이하 제한 또는 공제 할 일 범위 내)의 경우, 적격자산으로서의 관리자산이 20% 이상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추가 고려된다.

21 ErbStG § 13a III. 참고할 자료로는 임동원, "독일 기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2017년 11월 27일, 7면; 김경아, "국내 및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연구", 증권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44면 이하.

나. 세감면 특별 공제(기업자산 증가에 따라 세감면 감소)

특별공제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통해 2천 6백만 유로 한도 초과로 인해 발생하는 면제 비율의 하락 부분을 점진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할인 가능 최대 상한금액은 8,975만 유로(원화 기준, 약 1,190억 491만원)은 일반 감면대상이다. 약 9,000만 유로(원화 기준, 약 1,193억 3,640만원)은 선택 감면대상이다.

다. 감면대상 기업자산의 축소

사업용 기업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비사업용 자산이 50% 이하인 경우, 모든 자산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였던 기존의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3) 기업재산과 관리재산의 개념 재정립

관리재산, 이른바 비사업용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강화하였다. 즉, 비사업용 자산에 대한 범위가 예술작품 및 수집품, 학문적 수집물, 도서, 화폐, 귀금속과 보석 등의 외에도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과 같이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되었다.

IV 결론

최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도 개편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정한 기업에 대하여 가업승계 활용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개편(안)은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 한 것임에는 사실이다. 하지만, 개편(안)을 독일 가족승계지원제도와 비교해 보면, 기업의 현실과 경영환경의 변화에 상응한 조치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장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독일의 제도를 고려하여 몇 가지 제언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인원 수 대신에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고용유지 조건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은 과감하게 고용인원에 대한 요건을 배제하고 인건비 총액의 요건을 도입하였다. 기업혁신과정에서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진행과 함께 인력이 감축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변경만 허용하던 현행 제도 대신에, 개편(안)은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면서 일부는 중분류 범위 밖에 변경까지 허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독일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업종 변경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 변경을 막아서 기업이 사양 산업에 매달리게 되면 일자리나 세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제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요건을 10년으로 현행 제도 대신에 개편(안)은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자 한다. 독일은 일반감면과 선택감면으로 구분하고 사후관리기간도 5년과 7년이라는 선택지를 두어 탄력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 점을 고려하여 운용의 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경아, “국내 및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연구”, 중견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 김완일, “기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일본·독일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2.
- 김진·송은주·정희선, “주요국의 기업상속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 「세법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조세연구원, 2010.
- 박종수, “상증세법상 기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영국과 독일 세제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9.
- 임동원, “독일 기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2017년 11월 7일.
- 조병선,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 중견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 최갑선, “독일 기업 재산 승계와 상속세 감면 제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